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20460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 고 이AA (-2)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조BB (-1)
부산
변 론 종 결 2015. 4. 23.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5. 31.부터 2014. 3. 13.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CC와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 4.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김DD(-2 , 미국 국적명 : 김EE, 피고와 1974. 8. 21. 혼인신고 하였으나 1999. 5.경 미국으로 이민 갔다)과 2000. 1.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00. 3. 15.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김DD은 2006. 6. 30.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와 김DD 사이에 2011. 12. 16.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79(본소), 2011드합934(반소)].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5.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은행, ***-****-****-**)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8. 5. 24.경부터 2013. 1. 3.경까지 용종절제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호자로서 동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8. 31.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7. 5.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4. 3. 13.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소외 김DD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와 소외 김DD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